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50호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6. ~ 2026. 11. 10.
2.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검사기간 경과 차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시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된 후 매월 1.2%(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법령에 따라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 명령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2-726-6802)

2026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